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6
----------	-----

발의연월일 : 2024. 8. 23.

발의자 : 이진환, 전해연, 박경원,
박윤옥, 이경숙, 한근수,
정현미, 김지훈, 한송연

1. 제안이유

교섭단체의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섭단체의 효율적 기능 수행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필요한 경비 등”을 “경비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예산의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제5조(예산의 지원) ① ----- ----- ----- -- <u>경비 등 필요한 사항</u>----- ----.</p> <p>② <u>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의 지휘·감독에 따른다.</u></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5조(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의회사무국 운영전문위원 윤선기